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No. 2021-					
소관부서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처 ○○○○○○부	2021년	부서 “권고”	-	-	주의(2인)

제 목 : 「○○○○○·○○○○○○○」 제보관련 용역관리 부실 조사 건

1. 현황

- 공사의 「○○○○○·○○○○○○○ 공급관리」 용역수행사인 ○○○○○○(이하 “용역업체”라 한다)의 퇴직 직원 (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21. 0. 00.일 공사 민원통합처리시스템인 이음센터를 통하여 ○○○○○·○○○○○○○ 관리감독 부서인 ○○○○○○부를 대상으로 용역업체 인력관리 부실 (근무태만 및 근태 허위 보고 등) 및 고용노동 관계법규 위반(4대보험 미가입 등) 등을 실명 제보하였다. 제보자는 ‘21. 0. 00.일 ○○○○○○부 관계자와 면담 시, 용역업체의 인력관리 부실에 관하여 ○○○○○○부 관계자로부터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을 청취한 후, 민원을 취하하였고, ’21. 0. 00. 유사내용의 민원을 유선상으로 재 제기 하였다.

2. 사실관계 확인

1) ○○○○○ 인력변동 관련 과업지시서 내용

○인력변동 과업지시서 내용

- 용역업체 인력변동 시,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업체 인력증가 시, 공사의 총 소요인원 계획 범위내에서 가능

○실무 운영현황

- 용역업체 인력변동 시, ○○○○○○부 ○○○○○ 담당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있음.
- ○○○○○○부 ○○○○○ 담당자는 용역업체 인력증가 시, 공사의 총 소요인원 계획 범위 여부 확인하고 있음

2) ○○○○○○ 인력변동 과업지시서 내용

○인력변동 과업지시서 내용

용역업체 인력변동 시, 당초 인력대비 동등이상 실무능력이 있는자로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함.

○실무 운영현황

용역업체 인력변동 관련, 사전 미협의 및 관리소홀 사례 있음

3)○○○○○○부 ○○○○○○ 관련자 변동현황

○○○○○○○ 관련자		○○○○○○부(처) 재직기간	비고
담당자	○○○ ○○	‘20. 0. 0. ~ ’21. 0. 00.	‘21.0.0일부 ○○○○처 ○○○○○○○○부(현 부서)로 부서이동
	○○○ ○○	‘21. 0. 0. ~ 현재	‘21.0.0일부 ○○○○처 ○○○○○○○부(현 부서)로 부서이동
관리○○	○○○ ○○	‘19. 0. 00. ~ 현재	‘19.0.0일부 ○○○○단 ○○○○○○○에 서 ○○○○○부(현 부서) 로 부서이동
관리○○	○○○ ○○	‘20. 0. 0. ~ 현재	‘20.0.0일부 ○○○○단에서 현직 이동

3.위법부당내용

○용역업체 「○○○○○ 공급관리 종합용역」 인력변동 관련, 관리소홀

용역업체는 ‘20. 0. 0.일. ’20 . 0. 00.~ ‘22. 0. 00.까지 「○○○○○ 공급관리 종합용역」 관련 계약을 ○○○○○○부 주관 하에 공사와 체결하였다.

제보내용 중, 용역업체의 고용노동관계 법규 위반 문제를 제외한 인력관리부실 부분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 공급관리 종합용역」 인력 변동 시 과업지시서상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초 인력대비 동등이상 경험과 실무능력이 있는자로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용역업체는 「○○○○○ 공급관리 종합용역」 인력이 ‘20. 0. 00.일 1인, ’21. 0. 00.일 1인 총 2회에 걸쳐 2인의 인력변동(전임자 퇴사에 따른 신규인력의 채용)이 있었으나, ○○○○○○부에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관리감독 부서인 ○○○○○○부 담당자 2인은 이를 간과한채 용역을 진행하여 온 관리소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 전 ○○○○○부 ○○○ ○○(현 ○○○○처 ○○○○○○○ ○부)

전 ○○○○○부 ○○○ ○○(현 ○○○○처 ○○○○○○○부)은 '20. 0. 0.일 부터 '21. 0. 00.일까지 ○○○○○부 「○○○○ 공급관리 종합용역」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용역업체 기성금 지급업무는 '20. 0. 00.~'21. 0. 00. 기간동안 담당)

용역업체는 전 ○○○○○부 ○○○ ○○(현 ○○○○처 ○○○○○○○부)이 「○○○○ 공급관리 종합용역」 담당자였던 '20. 0. 0.일 '20. 0. 00.~'22. 0. 00.일 기간의 「○○○○ 공급관리 종합용역」 계약을 공사와 체결한 후, 약 1달후인 '20. 0. 00.일 직원1명의 퇴사로 인한 인력변동이 있었으나,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월 단위 기성금 청구의 근거가되는 근무인력현황에는 퇴사직원을 삭제하고, 신규인력을 기재하여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므로, 당시 담당자였던 전 ○○○○○부 ○○○ ○○(현 ○○○○처 ○○○○○○○부)은 비록 용역업체로부터 인력변동에 관하여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기성금 청구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월대비 인력의 변동현황을 점검하였다면, 변동인력을 파악하여, 용역업체에 연락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 변동인력이 과업지시서상에 기재한 조건(당초 인력대비 동등 이상 경험과 실무능력이 있는자)에 부합하는 인력인지에 관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기성금 청구 내역 검토시 근무인력현황에 관한 전월 대비 변동내역을 점검하지 않음으로서, 용역업체 1인의 인력이 변동된 '20. 0. 00.일 부터 '21. 0. 0.일 인사발령에 의거 본인이 현 ○○○○처 ○○○○○○○부로 부서이동시 까지, '20. 0. 0. 0.일 1인의 인력변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물론, 해당 인력이 과업지시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는 관리소홀을 지속하였다.

※ 전 ○○○○○부 ○○○ ○○(현 ○○○○처 ○○○○○○○부)의 '20. 0. 00. ~ '21. 0. 00. 기간동안 용역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은 정확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현 ○○○○○부 ○○○ ○○

현 ○○○○○부 ○○○ ○○는 전 ○○○○○부 ○○○ ○○(현 ○○○ ○○처 ○○○○○○○부)의 후임으로 '21. 0. 0.일 부터 현재 까지 「○○○ ○ 공급관리 종합용역」을 담당하고 있다.

(기성금 지급업무도 '21. 0. 0.일~ 현재까지 담당하고 있음)

○○○○○○부 ○○○ ○○는 전임자인 ○○○○○부 ○○○ ○○(현 ○ ○○○○처 ○○○○○○○부)의 관리소홀을 미인지한 상태에서, ○○○ ○ ○가 「○○○○ 공급관리 종합용역」 업무를 담당한 '21. 0. 0.일 후인 '21. 0. 00.일 업무대행사 직원 1인의 인력변동이 있었으나, 용역업체로부터 통보받지 아니한 채, 전월 대비 변동인력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함으로서 민원을 접수한 '21. 0. 00.일까지 과업지시서에 부합하는 인력인지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전임자와 동일한 관리소홀을 반복하였다.

※ ○○○○○부 ○○○ ○○의 '21. 0. 0.~ 현재까지 용역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은 정확히 이루어 졌음을 확인하였다.

4.처분요구내용

○용역업체 인력변동 시, 당초인력 대비 동등이상 경험과 실무능력이 있는 자로 (공사와)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한 취지는 용역업체로부터 제공받는 「○○○ ○ 공급관리 종합용역」의 품질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부 담당자는 해당 인력변동에 관한 조건이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다.

○'21. 0.00.일 민원이 제보된 이후, ○○○○○○○과 현 담당자(○○○ ○ ○)는 용역업체의 인력변동 등 제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20. 0. 00.일 1인, '21. 0. 00.일 1인 용역업체 인력변동이 있었음을 인지하였고 해당 변동 인력이 과업지시서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인력임을 확인하였다.

○전 ○○○○○부 ○○○ ○○(현 ○○○○처 ○○○○○○○부) : 주의
용역업체 인력변동(‘20. 0. 00.)과 해당 변동인력의 과업지시서상 조건충족 여
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전 ○○○○○부 ○○○ ○○(현 ○○○○처 ○○○
○○○○부)의 관리소홀은 공사 취업규칙 제 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직원 훈계등 처분에 관한 세칙 제 6조 제 7호에 의거하여 “주의” 처분한다.

○현 ○○○○○부 ○○○ ○○ : 주의
용역업체 인력변동(‘21. 0. 00.)과 해당 변동인력의 과업지시서상 조건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부 ○○○ ○○의 관리소홀은 공사 취
업규칙 제 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직원 훈계등 처분에 관한 세칙
제 6조 제 7호에 의거하여 “주의” 처분한다.

○○○○○○○부 : 부서 “권고”

○○○○○○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전 ○○○○○부 ○○○ ○○(현 ○○○○처 ○○○○○○○부) : “주의”]

[현 ○○○○○부 ○○○ ○○ : “주의”]

[○○○○○○부 부서 “권고”] .끝.